

제 4 장 금융서비스

제 4.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이, 그리고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이 취하는 금융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제4.4조·제4.5조 및 제4.6조는 상업적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기관의 금융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3장은 이 장에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에, 제1항에서 기술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4.2 조 GATS 규정의 통합

제3.2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제 4.3 조 정의

1. 제3.3조는 이 장에 적용되며, 제3.3조제1항다호는 예외로 한다.
2. 「금융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의 다음의 정의는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 가.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 (부속서 제1항나호 및 다호)

- 나. “금융서비스” (부속서 제5항가호)
- 다. “금융서비스 공급자” (부속서 제5항나호). 그리고
- 라. “공공기관” (부속서 제5항다호)

제 4.4 조 최혜국 대우

제3.4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제 4.5 조 시장접근

시장접근에 대한 약속은 GATS 제16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4.6 조 내국민대우

1. 내국민대우에 대한 약속은 GATS 제17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2. 그에 더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에 설립된 다른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불 및 청산 제도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이용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기관에 대한 접근을 부여한다. 이 항은 당사국의 최종 대부기관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3.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동등한 기초하에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기관, 증권 또는 선물 거래소 또는 시장, 청산기관, 또는 그 밖의 조직 또는 협회에 가입 또는 참여, 또는 접근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당사국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러한

기관에게 금융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특권 또는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기관이 자국의 영역에 설립된 다른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제 4.7 조 추가적 약속

추가적 약속은 GATS 제18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4.8 조 국내규제

1. 국내규제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6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로 합리적인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보험청구자,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신탁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인, 또는 유사한 금융시장 참여자의 보호. 또는

나. 당사국의 금융제도의 보전 및 안정성의 확보

그러한 조치가 이 장의 규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조치는 그러한 규정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상으로 부담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개별 고객의 사적 사항 및 계좌와 관련된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4.9 조

인정

1. 제3.9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2. 그에 더하여, 당사국이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경우, 그 당사국은, 동등한 규정·감독·그러한 규정의 이행이 존재하고, 적절한 경우, 그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국 간에 정보 공유에 관한 절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자국과 그러한 협정이나 약정에의 가입을 협상하거나 또는 이와 상응하는 협정이나 약정을 협상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다른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그러한 인정을 부여할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게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 4.10 조

자연인의 이동

서비스를 공급하는 당사국의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GATS 부속서」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부속서는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4.11 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8조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4.12 조

영업 관행

영업 관행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9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4.13 조

지불 및 송금

제3.13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제 4.14 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제3.14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제 4.15 조

예 외

일반적 및 안보상 예외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4.16 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각 당사국은 제3.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4.3조제2항나호에 정의된 서비스에 대하여 행한 구체적 약속을 제3.16조에 규정된 양허표에 명시한다.

제 4.17 조

양허표의 수정

제3.17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제 4.18 조

투명성

1. 투명성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제3조의2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2. 그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있어서 규제상의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따라서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규제 절차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적절히 협의한다.

가. GATS에서 당사국들이 수행한 작업과 금융서비스 무역에 관련한 그 밖의 회의에서 당사국들의 작업. 그리고

나. 공개적으로 소통되거나 달리 입수 가능한, 식별할 수 있는 정책목표 및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제절차의 규제적 투명성의 중요성

제 4.19 조

검 토

제3.19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제 4.20 조

금융서비스 소위원회

1. 금융서비스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공동위원회 산하에 설치한다. 각 당사국의 주요 대표는 이 협정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금융당국 출신으로 한다.

2. 소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장의 이행을 관리하고, 그 기능을 평가하며, 심화 발전을 감독한다.

나. 당사국이 소위원회에 제기한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한다.

3. 소위원회는 공동위원회 회의와 함께 또는 당사국들 간에 달리 합의한 바에 따라 소집된다.

4. 대한민국 그리고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중 하나가 소위원회의 공동의 장이 된다. 소위원회는 컨센서스에 의하여 운영된다.

제 4.21 조

분쟁해결

1. 제9장의 관련 규정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에 대하여 이 조에 의하여 수정된 대로 적용된다.

2. 제9장에 따라 개최된 금융서비스에 관련된 협의는 이 협정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금융당국자의 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당사국들은 협의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3. 제9.4조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 적용된다.

가.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경우, 패널은 제4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으로 전원 구성된다. 그리고

나. 그 밖의 경우,

(1) 각 분쟁당사국은 제9.5조제7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을 선발할 수 있다. 그리고

(2) 피소 당사국이 제4.8조를 원용하는 경우,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의장은 제4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금융서비스 패널위원은,

가. 제9.5조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 금융기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법률 또는 관행에 대한 전문식견 또는 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

5. 제9.10조제5항에 대하여, 실행가능한 경우 언제나 다음이 적용된다.

가. 분쟁중인 조치가, 금융서비스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

국은 우선 금융서비스 분야만의 혜택을 중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나. 분쟁중인 조치가, 금융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우선 각 분야에서 피소의 대상이 된 조치의 효과에 상응하는 효과만큼 각 분야에서 혜택을 중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는
- 다. 분쟁중인 조치가, 금융서비스 분야 외의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혜택을 중지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